



제400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173호)

2022.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상훈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2. 4. 8.

다. 회 부 일 : 2022. 4.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할 경우 지급받는 공적연금 관련 일시금,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퇴직소득에 대하여 근로연수, 환산급여 등을 고려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후 이에 따라 산출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징수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직장을 퇴직하고 다음 인생을 대비할 때 중요한 자금이 되고 있는바,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이 퇴직 후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재취업이나 창업 또는 은퇴 후 퇴직금으로 노후를 꾸려가가는 데 있어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공적연금 관련 일시금,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 등 퇴직소득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토록 함으로써 재취업이나 창업 또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 확대 등 퇴직소득세 감면 관련

현행	김상훈의원안	배준영의원안	정부안																				
☐ 비과세소득(제12조) ☐ 퇴직소득(제22조) ☐ 퇴직소득공제(제48조)	☐ (현행과 같음) ☐ 퇴직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 ☐ (현행과 같음)	☐ 퇴직소득 중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근로자가 받는 5천만원 이하의 소득 비과세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 확대																				
<table><tr><th>근속연수</th><th>공제액</th></tr><tr><td>5년 이하</td><td>30만원×근속연수</td></tr><tr><td>6~10년</td><td>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td></tr><tr><td>11~20년</td><td>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td></tr><tr><td>20년 초과</td><td>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td></tr></table>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6~10년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1~20년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table><tr><th>근속연수</th><th>공제액</th></tr><tr><td>5년 이하</td><td>100만원×근속연수</td></tr><tr><td>6~10년</td><td>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td></tr><tr><td>11~20년</td><td>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td></tr><tr><td>20년 초과</td><td>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td></tr></table>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6~10년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11~20년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6~10년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1~20년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6~10년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11~20년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 김상훈의원안(2022. 4. 8. 발의, 의안번호 15173), 배준영의원안(2022. 8. 1. 발의, 의안번호 16711), 정부안(2022. 9. 1. 제출 의안번호 17169)

☐ 개정안들은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퇴직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하여 퇴직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김상훈의원안은 퇴직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 배준영의원안은 퇴직소득 중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근로자가 받는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의 소득세를 비과세 하려는 것임.

○ 정부안은 퇴직소득공제 중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하여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이 더 크게 경감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려는 것임.

- 퇴직소득¹⁾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의미하며,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는 분류과세 방식에 의하여 과세되고 있음.
- 퇴직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구성되며,
- 퇴직소득은 장기간 형성되는 소득인 점을 감안하여 결집효과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여 환산급여를 산출하고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이후 기본세율을 곱하여 퇴직소득세를 결정하고 있음.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방식¹⁾]

- ①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²⁾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② 산출세액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6~45%)] ÷ 12} × 근속연수

주 1) 2020년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계산방식

2)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퇴직소득공제는 ① 근속연수공제와 ② 환산급여공제로 구성되어있음.
- ① 근속연수공제는 1990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 ② 환산급여공제는 2015년까지는 정률공제 방식을 적용하였으나, 2016년 이후²⁾에는 소득에 비례하여 차등공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1)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퇴직소득공제 (2016년 이후)]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환산급여	차등공제율과 공제액
5년 이하	<u>30만원</u> × 근속연수	~ 800만원	환산급여의 100%
6 ~ 10년	<u>150만원</u>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800만원 ~ 7,000만원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7,000만원 ~ 1억원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11 ~ 20년	<u>400만원</u>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1억 원 ~ 3억 원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20년 초과	<u>1,200만원</u>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3억 원 ~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2015년 이전 정률공제의 변천과정]

적용연도	공제율
1998년까지	퇴직급여의 50%
1999 ~ 2001년	퇴직급여의 50%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급여의 75%)
2002 ~ 2005년	퇴직급여의 50%
2006 ~ 2010년	퇴직소득금액의 45%
2011 ~ 2015년	퇴직소득금액의 40%

□ 개정안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첫째, 고령화로 퇴직 후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퇴직자의 생활을 폭넓게 지원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들은 퇴직소득 5천만원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김상훈의원안은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5천만원 이하의 퇴직소

2) 세법개정은 2014년에 이루어졌으며, 시행일이 2016년 1월 1일임. 또한 개정안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두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각 연도별로 종전규정과 개정규정을 일정비율대로 적용하도록 하였음.

득은 비과세하도록 정하고 있고, 배준영의원안은 근속연수 10년 이상이고 5천만원 이하의 퇴직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며, 정부안의 경우에도, 퇴직금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근속연수가 20년 이상인 경우 퇴직소득세가 비과세 되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음. 정부안에 따른 퇴직소득세 경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근속연수가 10년이고 퇴직금이 5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66만원 감면, 근속연수가 20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0원이 됨.

[정부안에 따른 퇴직소득세 경감 시뮬레이션]

(단위 : 만원)

퇴직금	구분	근속연수							
		3년	5년	8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5천만원	현행	427	256	178	146	77	59	37	14
	개정	390	222	130	80	30	0	0	0
	감소액	△37	△34	△48	△66	△47	△59	△37	△14
	(감소율)	(8.6%)	(13.2%)	(27.1%)	(45.2%)	(60.9%)	(100.0%)	(100.0%)	(100.0%)
1억원	현행	1,519	1,032	665	498	360	268	167	134
	개정	1,467	964	560	403	240	112	68	24
	감소액	△52	△67	△105	△96	△120	△156	△99	△110
	(감소율)	(3.4%)	(6.5%)	(15.9%)	(19.2%)	(33.4%)	(58.2%)	(59.3%)	(82.1%)
1.5억원	현행	2,775	2,120	1,447	1,158	723	584	467	366
	개정	2,720	2,034	1,293	1,013	566	400	245	144
	감소액	△55	△86	△154	△145	△157	△184	△222	△222
	(감소율)	(2.0%)	(4.1%)	(10.6%)	(12.5%)	(21.7%)	(31.5%)	(47.5%)	(60.7%)
2억원	현행	4,075	3,355	2,409	2,044	1,381	954	794	667
	개정	4,020	3,269	2,255	1,833	1,124	733	545	390
	감소액	△55	△86	△154	△212	△257	△221	△249	△277
	(감소율)	(1.3%)	(2.6%)	(6.4%)	(10.4%)	(18.6%)	(23.2%)	(31.4%)	(41.5%)
5억원	현행	12,438	11,317	9,983	9,223	7,509	5,937	4,957	3,977
	개정	12,377	11,221	9,775	8,937	7,028	5,398	4,244	3,369
	감소액	△61	△96	△208	△286	△482	△539	△712	△608
	(감소율)	(0.5%)	(0.8%)	(2.1%)	(3.1%)	(6.4%)	(9.1%)	(14.4%)	(15.3%)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전체 퇴직자 인원은 329만 3천명 수준이고 이 중 5,000만원 이하의 퇴직급여액을 받고 있는 사람이 314만명(95.4%)에 달하고 있어, 퇴직금을 수령하는 대다수의 근로자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퇴직급여액 및 급여액 별 평균 퇴직소득세(2020년)]

(단위: 명, 백만원, 원)

구분	퇴직자 인원(A)	신고대상세액(B)	1인당 퇴직소득세(B/A)
1천만원 이하	2,490,889	99,770	40,054
2천만원 이하	405,020	93,658	231,243
4천만원 이하	202,568	113,204	558,844
5천만원 이하	41,850	41,870	1,000,478
6천만원 이하	24,678	37,946	1,537,645
8천만원 이하	30,734	67,151	2,184,909
1억원 이하	18,009	57,857	3,212,671
2억원 이하	46,261	255,562	5,524,351
3억원 이하	17,249	208,626	12,094,962
5억원 이하	10,230	289,109	28,260,899
5억원 초과	5,808	670,292	115,408,402
계	3,293,296	1,935,045	587,571

자료: 국세통계포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 둘째, 현재의 퇴직소득공제제도는 최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³⁾에 따르면, 근속연수공제가 도입된 1990년의 평균 소비자물가지수는 38.5이며 현재의 퇴직소득공제(환산급여공제)가 시행된 2016년의 평균 소비자물가지수는 95.8인 반면, 2022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2로서 1990년 대비 184%, 2016년 대비 14.0%의 물가

3) 2020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함. (자료: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상승이 있었음.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득공제 제도가 계속 적용됨에 따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명목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실질소득의 증가 없이도 세부담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난 바, 이를 반영한 퇴직공제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임.

□ 다만, 비과세 제도를 설계할 때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① 고소득자가 단기간 일하고 5천만원 이하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고(김상훈의원안), ② 근속연수 10년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가 146만원에서 0원으로 급격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배준영의원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참고로, 퇴직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퇴직자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면제하는 김상훈의원안에 따른 소득세 감소효과는 5년 간 총 1조 5,129억원(연평균 3,026억원)으로 추계⁴⁾되었음.

문 의 처
02)6788-5155

4)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결과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퇴직소득) ① ~ ④ (생략) <u><신설></u> ⑥ (생략)	제22조(퇴직소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제1항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⑥ (현행과 같음)